(발송)회사 → (수신)구성원

|  |
| --- |
| **노무수령거부 통지서**<근로기준법 제61조 관련> |
|  |
| **소속** |  | **사원번호** |  | **성명** |  |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회사는 귀하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부득이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금일은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날이므로 귀하는 금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는 귀하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귀하가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20 년 월 일(주) OOOOO |
|  |
| ---------------------------------------------- 절 취 선 ----------------------------------------**노무수령거부통지 수령확인증** |
| **소속** |  | **사원번호** |  | **성명** |  |
| 본인은 금일 00시 00 회사의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 년 월 일수령인 : (서명)(주) 0000000 귀중 |